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

1. 대상 투자신탁 : 하이 증소형주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1호[주식]

2. 변경 시행일 : 2017년 12월 14일

3. 변경사유

- ①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
- ②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
- ③ 수익증권 신설 : 종류 C-P, 종류 C-Pe, 종류 C-P2, 종류 C-Pe2
- ④ 환매수수료 삭제
- 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공시)

4. 변경사항

가. 집합투자규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조 (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	① 내지 ② (생략) ③ 이 투자신탁은 __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지 15.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이 투자신탁은 __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지 15. (현행과 같음) 16. 종류 C-P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 17. 종류 C-Pe 수익증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18. 종류 C-P2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19. 종류 C-Pe2 수익증권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서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④ (생략) ① 집합투자업자는 __ 발행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① 집합투자업자는 __ 발행하여야 한다.

<p>(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p>1. 내지 15.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p> <p>② 내지 ⑤ (생략)</p>	<p>1. 내지 15. (현행과 같음) 16. 종류 C-P 수익증권 17. 종류 C-Pe 수익증권 18. 종류 C-P2 수익증권 19. 종류 C-Pe2 수익증권</p> <p>② 내지 ⑤ (현행과 같음)</p>
<p>제25조의3 (수익증권의 전환)</p>	<p>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1조에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 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 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① 내지 ④ (현행과 같음) < 삭 제 ></p>
<p>제39조 (보수)</p>	<p>① 내지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___ 금액으로 한다. 1. 내지 15. (생략) <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___ 금액으로 한다. 1. 내지 15. (현행과 같음) 16. 종류 C-P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7.5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17. 종류 C-Pe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3.8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18. 종류 C-P2 수익증권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 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8.0 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 19. 종류 C-Pe2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7.2</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4.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4</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2</p>
<p>제40조 (판매수수료)</p>	<p>① 내지 ② (생략)</p> <p>③ 판매회사는 ___ 취득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 S-P2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내지 ⑤ (생략)</p>	<p>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p> <p>③ 판매회사는 ___ 취득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종류 C-P2 수익증권, 종류 C-Pe2 수익증권, 종류 S-P2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④ 내지 ⑤ (현행과 같음)</p>
<p>제41조 (환매수수료)</p>	<p>① 이 투자신탁의 모든 종류의 수익증권은 환매수수료를 징구하며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26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p>② 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금(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 이하 본 항에서 “이익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30일미만 : 이익금의 70% 2. 30일이상 90일미만 : 이익금의 30% <p>③ 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른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종류 S-P2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p>	<p>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제43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 내지 ③ (생략) ④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및 ___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내지 ③ (현행과 같음) ④ 수익자는 제2항에 따른 공시일(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 및 ___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 내지 ② (생략)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④ (생략)	① 내지 ② (현행과 같음) < 삭제 > ③ (현행과 같음)
제52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종류 S-P2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수익자는 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종류 C-P2 수익증권, 종류 C-Pe2 수익증권, 종류 S-P2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신 설>	이 신탁계약은 2017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환매수수료)는 변경시행일 이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나. 투자설명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갱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운용인력(운용현황) - 재무정보 -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집합투자업자 운용자산 규모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추 가>	2017-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매수수료 삭제 - 종류 C-P / 종류 C-Pe / 종류 C-P2 / 종류 C-Pe2 수익증권 신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 종류형 구조	<환매수수료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종류 수익증권 : 환매수수료 없음 	

<p>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2) 종류별 가입자격</p>	<p>- 전환시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p> <p><신 설></p>	
<p>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p>	<p>종류 C-P 수익증권 (협회코드 BZ583)</p> <p>①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인 경우</p> <p>② 투자신탁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72% - 판매회사보수율 : 연 0.75% -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p>종류 C-Pe 수익증권 (협회코드 C1162)</p> <p>① 가입자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로서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p> <p>② 투자신탁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72% - 판매회사보수율 : 연 0.38% -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p>종류 C-P2 수익증권(협회코드 C1252)</p> <p>①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p> <p>② 투자신탁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72% - 판매회사보수율 : 연 0.8% -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p>종류 C-Pe2 수익증권(협회코드 C1253)</p> <p>① 가입자격 :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서 판매회사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p> <p>② 투자신탁 보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72% - 판매회사보수율 : 연 0.4% -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4%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 	
<p>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접합한 투자자 유형</p>	<p>※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 18.00%</p>	<p>※ 실제 수익률 변동성(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 : 19.29%</p>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 과세	<추 가>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 수시공시	<추 가>	<p>⑩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p> <p>가.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p> <p>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p> <p>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p> <p>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p>

끝.